

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

(1장)

신고인 (등록 의무자)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 (휴대전화) ()
	소속	직위	직급 등
	주소		
담당직무 내용	※ 법령·직제·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.		

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	직무 구분	주식명 (발행인)	관여내역			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
			일시	방법	세부내역	

「공직자윤리법」 제14조의11제3항·제4항 및 「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」 제19조의3제7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직무에 관여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-----	---

작성방법

< ‘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’ 작성방법 >

- ‘구분’ 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.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·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·조사·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·허가·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·부과·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·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·심의·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 - 해당 주식의 발생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·감독하는 직무
- ‘관여내역’ 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, 관여방법(결재, 지시, 의견표명 등), 관여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.
(예: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를 한 경우, 계약명 및 금액,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)
-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십시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